

#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공통 준수사항

## ◆ 추가 확보시설 조건

1. 추가확보시설은 관련 서류 구·군 제출 후 등록승인 된 시설만 활용가능(사전신고 필수)
2. 등록 시설 기준(33㎡)을 충족하고, 협약서 및 안전 관련 서류(배상책임보험 등 증명서) 제출 필수
  - ※ 협약서는 권한 있는 실 사업자, 대표자와의 협약만 인정(경로당의 경우 지자체 소유는 구·군청장, 마을 소유 또는 공동주택소유는 각 대표자와 협약)
3. 국비 또는 지방비가 지원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경우 추가확보시설로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
  - ※ 단,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, 장애인복지관, 종합사회복지관은 허용
  - 사회복지거주시설 및 거주시설과 함께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불가
4. 추가확보시설 변경 신청 시 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 신청서(제16호 서식) 활용
5. 추가확보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실시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비스 제공 인정 불가함.

## ◆ 제공인력 경력 산정 기준

1. 경력산정기준 : 각 서비스 별 서비스 대상, 서비스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력만 인정
2. 경력기간 산정
  - ① 상근근무경력 인정(주40시간 전일제로 근무한 경력)
    - 3개월 : 480시간, 6개월 : 960시간, 1년 : 1,920시간, 2년 : 3,840시간, 3년 : 5,760시간
  - ② 시간제(주단위, 월단위 등) 경력 시 근무시간 명시(전체 경력기간 내 총 활동시간 명시)
  - ③ 교육, 상담, 프로그램지원 등 실무만 인정되며, 보조진행, 봉사활동, 단순행정업무 등은 경력인정 불가 (사회보험가입증명서 제출-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재보험, 건강보험 중 택 1)
3. 경력증명서 필수 기재 사항
  - ① 기관명(사업자등록번호, 주소, 대표자, 전화번호 포함), 인적사항, 근무기간 및 시간  
(ex) 2019.01.01.~2019.03.31. 주3회 일3시간, 총117시간, 근무내용(구체적 명시)
  - ※ 시군구는 제공인력 등록 시 경력사항에 대한 확인 필수
  - ※ 제공기관 자체경력인 경우 서비스 경력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비스제공기록지 등 증빙서류 첨부

◆ **제공인력 자격기준** : 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인력은 제공자와 서면으로 근로 계약이 체결 된 사람으로 함.(위탁계약 및 위촉계약 불가)

◆ **서비스 제공기록지**는 제공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하나 필수작성내용(이용자 성명, 생년월일, 제공일시, 서비스 내용, 집단규모, 이용자 서명, 제공인력서명 등)을 포함하여야 하며 서비스 제공내용을 상세하게 기재

## ◆ 안전관리기준 준수

1. 제공기관은 안전관리계획서 매년 작성
2. 기관방문형
  - ① 이용자 및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
  - ② 연1회 이상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실시, 사용 시설물은 월1회 이상 안전여부 점검
  - ③ 연1회 이상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
  - ④ 연2회 이상 제공인력 대상 안전교육 실시
3. 재가방문형
  - ① 제공인력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
  - ② 연2회 이상 이용자 안전을 위한 제공인력 보건 및 안전교육 실시
4. 집단활동형
  - ① 제공인력 응급처치교육 연4시간 이상 의무수료
  - ② 표준계약서 안전사고에 대한 기준 제시
  - ③ 서비스 이용자 여행자보험가입 필수
  - ④ 서비스 이용자 안전교육 대장, 비상연락망, 보호자 동의서
  - ⑤ 체험시설 안전확인 대장
  - ⑥ 여행사 배상/상해 보험증명서, 차량등록증, 차량보험가입증명서, 운전기사 재직증명서 구비
  - ※ 제공기관장은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등 위험에 대비하여 사전·사후조치를 하여야 하며, 등록기관(지사지부가맹점 등 포함), 협력기관, 제공인력 등의 의무 이행 행태, 부정행위 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함.

# 1 [020108]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발달문제가 우려되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관찰·평가를 통해 환경적·신체적 원인을 분석하고 발달 지연 영역(발달기초, 언어발달, 초기인지, 정서·사회성 등)을 촉진할 수 있는 통합적 조기중재 서비스를 설계하여 제공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 : 중위소득 <u>150% 이하</u></li> <li>○ 연령 : 만6세 이하</li> <li>○ 선정기준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 중 발달 평가결과, 발달지연, 심화검사(평가)권고, 발달 경계, 추후 검사 필요 등급을 받은 영유아 (신청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서 제출)</li> <li>※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(행복e-음에서 확인)</li> <li>※ 여성가족부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자녀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</li> </ol> </li> <li>○ 우선순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화검사(평가)권고 등급으로 심화검사 결과 발달지연 판정 영유아 (발달지연 영유아는 영유아건강검진결과지와 심화검사결과지 모두 필요)</li> <li>2. 병원 영유아건강검진결과 발달경계, 심화검사(평가)권고, 추후 검사 필요 등급 영유아</li> <li>※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영유아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o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, “청소년기본법”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(이하 “청소년상담사”), “초·중등교육법” 제21조에 의한 초등교사, 전문상담 교사(이하 “전문상담 교사”)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, “유아교육법” 제22조제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, “영유아보육법”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의한 보육교사, “의료법” 제7조에 의한 간호사, “사회복지사업법”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, 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(이하 “정신보건전문요원”), “국가기술자격법”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(이하 “임상심리사”)</li> <li>2.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따른 미술, 음악, 행동, 놀이, 심리, 상담, 심리운동, 감각통합 등 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문제행동아동이나 영유아발달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li> <li>3. 심리, 상담, 음악·미술 재활(심리 또는 상담학), 아동청소년학, 유아교육학, 사회복지학, 보육학, 재활학, 특수체육학 등 영유아 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</li> <li>② 학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</li> <li>③ 석사학위 취득 후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</li> </ol> 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<u>160천원/월</u>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초과 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 140%초과 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28천원</td> <td>112천원</td> <td>96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6천원</td> <td>32천원</td> <td>48천원</td> <td>64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<u>192천원까지</u> 가능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li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 ~140%이하	중위소득 140%초과 ~150%이하	정부지원금	144천원	128천원	112천원	96천원	본인부담금	16천원	32천원	48천원	64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 ~140%이하	중위소득 140%초과 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44천원	128천원	112천원	96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6천원	32천원	48천원	64천원																	

항목	내용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○ 서비스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91 302 1396 757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91 302 1259 347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259 302 1396 347">서비스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91 347 1259 651">               1. 기본서비스                ① 발달기초영역 : 기본적 대근육,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               ② 언어발달영역 : 의사소통 기능·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               ③ 초기인지영역 :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               ④ 정서·사회성영역 :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·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               ※ 집단규모 1:1 서비스 제공 시, 주1회 (회당 40분/부모상담 10분)                ※ 집단규모 1:2 이상 제공 시, 주2회 (회당 60분)    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59 347 1396 651">               주2회                회당 60분                (월8회)                *1일 1회                서비스 원칙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1 651 1259 703">               2. 부모상담 및 교육    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59 651 1396 703">               월1회    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91 703 1259 757">               3.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    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59 703 1396 757">               월1회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매월 부모상담 및 교육</li> <li>③ 매월 서비스 결과 월별보고서 작성 및 배부</li> <li>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필요시 장애아동 재활치료, 교과부 특수교육 등 기타서비스 연계 의무화</p> <p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K-CDI 또는 CBCL) 의무실시</p> <p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	서비스 내용	서비스횟수	1.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: 기본적 대근육,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: 의사소통 기능·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: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·사회성영역 :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·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※ 집단규모 1:1 서비스 제공 시, 주1회 (회당 40분/부모상담 10분) ※ 집단규모 1:2 이상 제공 시, 주2회 (회당 60분)	주2회 회당 6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부모상담 및 교육	월1회	3.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	월1회
서비스 내용	서비스횟수								
1. 기본서비스 ① 발달기초영역 : 기본적 대근육, 소근육 운동기술 촉진 ② 언어발달영역 : 의사소통 기능·기술 및 어휘발달 촉진 ③ 초기인지영역 : 감각운동에 기초한 인지발달 촉진 ④ 정서·사회성영역 : 기본적인 정서표현 및 가족·타인과의 사회성 활동 촉진 ※ 집단규모 1:1 서비스 제공 시, 주1회 (회당 40분/부모상담 10분) ※ 집단규모 1:2 이상 제공 시, 주2회 (회당 60분)	주2회 회당 6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
2. 부모상담 및 교육	월1회								
3. 서비스 결과 월별 보고서 작성 및 배부	월1회								
⑥ 집단규모	<p>○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소그룹으로 운영 (1:1~1:5)</p>								
⑦ 서비스지역	<p>○ 전 구군</p>								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<p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</p>								

## 2 [010108]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

항목	내용
① 목적	심리·행동 문제의 조기 발견 개입을 통한 아동·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 령 : 만 18세 이하 아동·청소년. 단, 고등학교 재학 중인 만 18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서비스 적용 대상으로 인정</li> <li>○ 선정기준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·청소년 중 서비스 지원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주의력결핍 및 과잉행동장애(ADHD)</li> <li>② 정서적 문제: 불안, 우울, 공포, 불안정 애착 등</li> <li>③ 사회성 결여: 사회적 위축, 자기표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</li> <li>④ 발달장애 경계: 언어 및 인지문제</li> <li>⑤ 반항, 품행장애, 비행 등 기타 종합심리검사를 통해 문제로 파악된 경우(단,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에서 제외되는 9개 유형(지체, 정신, 신장, 심장, 호흡기, 간장, 안면, 장루 및 요루, 간질)만 포함)</li> </ol> </li> <li>2. 욕구판단은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제출한 아동·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함.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진단서(혹은 소견서)는 각 지역 병원, 학교, 정신건강복지센터, 아동보호전문기관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위센터,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소속된 아동·청소년 대상의 심리평가가 가능한 전문가(의사, 임상심리사, 정신건강전문요원, 청소년상담사, 전문상담사(교사)가 수행한 임상심리평가 결과지가 첨부된 것이어야 함.(진단서(혹은 소견서)의 요약서도 첨부되어야 함)</li> <li>- 임상심리평가는 부모보고 검사도구와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를 각각 필수로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하여야 함. 부모보고 검사도구는 K-CBCL, K-ARS, RCMAS, -PRC, -CYP, PRES/ SELSI, KPI-C, MMPI(다면적 인성검사) 중 하나를 필수로 선택하여야 하며,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K-WISC-IV (WPPSI, WAIS포함) 지능검사, K-ABC2 중 하나를 필수로 활용하여야 함. 검사결과는 절단점이나 백분위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전문적 개입의 필요성이 높은 아동·청소년임이 확인되어야 함.</li> <li>※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, 장애아동발달재활서비스와 중복지원 불가(행복 e-음에서 확인)</li> <li>※ 다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서비스를 중복 수혜하지 않는 아동·청소년을 우선적으로 지원</li> <li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li>※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신청 시 진행하였던 이용자의 심리검사지 원본 및 검사결과 사본은 반드시 보관하여야 하며, 허위검사 적발 시 이용자격 중지</li> </ul> </li> </ol> </li> </ul>
③ 제공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공기관 자격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‘사회서비스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’ 제 16조에 의거 등록된 기관</li> </ul> </li> <li>○ 제공기관장(슈퍼바이저) 자격기준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공기관은 제공기관의 인력 중 슈퍼바이저를 1인 이상 지정하도록 하며, 제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준을 충족할 경우 겸직할 수 있음</li> <li>1) 슈퍼바이저는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리, 상담, 언어치료학, 놀이치료학, 미술치료학, 음악치료학 등 아동·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 관련 전공 학사학위 이상인면서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7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이상인면서 석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</li> </ul> </li> <li>2) 슈퍼바이저는 아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소속 기관의 사례회의를 주재하고 논의된 사례에 대해 일정 수준의 슈퍼비전을 제공함</li> <li>- 자신의 전공분야에 대해 소속 기관의 치료사들과 관심 사례를 논의하고 논의 과정을 주도함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
③ 제공인력	<p>○ 제공인력 자격기준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“장애인복지법” 제72조의2에 따른 언어재활사, “청소년기본법” 제22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사(이하 “청소년상담사”), “초·중등교육법”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 교사 및 특수학교 정교사, “정신보건법” 제7조에 의한 정신건강전문요원(이하 “정신건강전문요원”), “국가기술자격법”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(이하 “임상심리사”)</li> <li>2. 놀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심리상담(심리운동 포함) 등 아동·청소년 발달지원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, 학사학위 취득 이후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3. “자격기본법”에 등록된 놀이, 미술, 음악, 심리(심리운동 포함), 상담 등 치료 관련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/ol>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p>○ 서비스 가격 : 180천원/월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600 1457 840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 초과 ~150% 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62천원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26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8천원</td> <td>36천원</td> <td>54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216천원까지 가능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p> <p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, 재판정1회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, 6개월마다 중간점검을 실시(서비스 제공기관에 의해)하여 서비스 지속적인 제공여부 및 의뢰 여부를 판단하게 함.</li> <li>- 재판정은 연속적인 서비스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인정함</li> <li>- 재판정을 위해서는 지난 1년간의 서비스에 대한 사전/사후검사결과지, 서비스 종결평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되, 서비스 대상 욕구판정 및 진단서(소견서) 제출과정은 이전 서비스 신청과정과 동일함.</li> </ul> <p>※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</p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 초과 ~150% 이하	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26천원	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54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 초과 ~150% 이하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26천원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54천원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○ 서비스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6 1153 1437 1989"> <thead> <tr> <th>서비스 내용</th> <th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         1. 기본서비스 (필수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·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</li> </ul> </td> <td rowspan="3">           주1회            회당 50분            (월4회)            *1일 1회           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① 언어프로그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아동·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</li> <li>- 효과: 아동·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,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,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② 놀이프로그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의 생각, 감정,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</li> <li>- 효과: 아동·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,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·청소년의 심리적,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③ 미술프로그램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·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</li> <li>- 효과: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·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,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</li> </u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기본서비스 (필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·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</li> </ul>	주1회 회당 50분 (월4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① 언어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아동·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</li> <li>- 효과: 아동·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,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,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</li> </ul>	② 놀이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의 생각, 감정,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</li> <li>- 효과: 아동·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,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·청소년의 심리적,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</li> </ul>	③ 미술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·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</li> <li>- 효과: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·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,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</li> </ul>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
1. 기본서비스 (필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아동·청소년의 조기개입서비스 기본프로그램</li> </ul>	주1회 회당 50분 (월4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
① 언어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아동·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언어능력을 진단하고 언어문제 유형을 분석하며 이를 중재하는 치료프로그램임</li> <li>- 효과: 아동·청소년이 자신의 생각이나 욕구, 감정 등을 언어로 적절히 표현하며 또래나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하고 심리, 정서적 문제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짐</li> </ul>																	
② 놀이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언어로 표현하고 전달하기 어려운 아동·청소년의 생각, 감정, 행동을 놀이를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극복과 잠재된 가능성 극대화하는 프로그램임</li> <li>- 효과: 아동·청소년은 놀이를 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껴 불안감이나 방어적 태도가 줄어들고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, 성취감을 통해 자아존중감 향상과 다양한 문제해결을 시도하므로 아동·청소년의 심리적, 행동적 문제 해결에 효과를 가짐</li> </ul>																	
③ 미술프로그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시각적인 미술매체를 통해 내면의 손상된 부분에 올바른 변화를 주는 프로그램으로서 예술적인 자기표현 과정이 아동·청소년의 무의식을 활성화시키고 창조적 기능을 자극하여 자기 치유능력 증진에 도움을 제공함</li> <li>- 효과: 미술표현으로 심리적 불안정과 손상된 감정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제공하고 아동·청소년시기의 자기표현 및 자아개념, 대인관계 기술을 발달시키며 문제행동 감소와 원만한 상호소통 및 적응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</li> </ul>																	

<p>④ 음악프로그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음악활동을 체계적으로 사용하여 문제성 있는 행동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프로그램으로서 아동·청소년의 내적/외적 요소들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고 평가하여 치료계획 수립과 음악활동을 실행함</li> <li>- 효과: 다양한 음악활동을 통해 자유로운 창의적 표현과 더불어 감각 및 인지,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을 향상시켜 아동·청소년의 긍정적인 정서발달과 함께 사회 구성원으로서 바람직한 성장을 도움</li> </ul> <p>⑤ 심리상담프로그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내용: 아동·청소년이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특성을 학습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서 상담을 통해 사고, 정서, 행동 측면의 문제를 스스로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게 함</li> <li>- 효과: 특히 청소년들은 다른 매체를 사용하지 않고 자신의 말로써 표현하므로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효과를 꾀할 수 있으며,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직·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족의 심리·정서적인 안정과 정신건강에 효과를 보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심리상담의 경우 아동·청소년을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의 심리치료적 개입을 포함하며 치료적 필요에 따라 회기별 상담에 참여하는 가족의 범위는 변동될 수 있음.</li> </ul> </li> <li>- 부모상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아동·청소년과 관련된 정보 제공과 증재를 위한 부모상담(면담) 서비스</li> <li>* 부모상담의 유형은 아래의 3가지 방식 중 1가지를 택하여 진행할 수 있음</li> </ul> </li> <li>㉠ 기본프로그램 제공 후 10분 이상의 부모상담을 실시 함</li> <li>㉡ 제공기관(제공인력 포함)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아동과 부모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음</li> <li>㉢ 제공기관(제공인력 포함)과 부모가 합의를 통해 월 1회 프로그램은 부모상담만으로 진행할 수 있음</li> <li>- 심리검사(사전·사후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: 심리평가도구를 통한 아동·청소년의 심리·행동 문제를 진단하고 변화를 측정함</li> <li>* 심리검사는 기본서비스 시작시 기본 프로그램 영역별 검사도구에 의한 사전 검사를 실시하고 서비스 종결 시 동일한 검사도구로 사후검사도 실시함.</li> <li>* 사전, 사후검사 심리평가도구는 [별표3] 참고</li> </ul> </li> </ul>	
<p>2. 부가서비스 (선택)</p> <p>①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: 집단활동 프로그램으로써 방학, 휴일을 이용해 서비스 제공 (필요시)</p> <p>② 부모교육 : 아동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에게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치유적 접근 프로그램 (수시)</p>	필요시 및 수시
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아동·청소년의 문제특성 및 유형에 적합한 영역별 프로그램(언어, 놀이, 미술, 음악, 심리상담)을 선택하고 이용자 욕구, 사전·사후검사, 서비스 내용, 제공절차 등 서비스 전반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상 아동·청소년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및 관리해야 함.</li> <li>① 1단계 :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서비스 계약 단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(*서비스 영역별 전문가에 의한 체계적인 평가·진단을 통해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)</li> <li>- 이용자 상담 및 욕구 파악</li> <li>- 사전검사 (필수실시-[별표 3]의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기초선 측정 및 결과지 첨부)</li> <li>-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[별표 3]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(단,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(공통)와 상담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)</li> <li>-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며 2개 이상의 (객관+주관 평가도구)의 평가도구를 활용함(단,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)</li> <li>- 서비스 대상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객관적 심리평가도구([별표 3]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)는 사전검사 시 재검사 없이 그대로 활용 가능함.</li> <li>- 서비스 제공계획서 작성</li> <li>- 서비스 제공(이용) 계약서 상호작성 및 배부</li> </ul> </li> </ul>	

	<p>② <b>2단계</b> :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단계  (*계약이 완료된 이용자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선택하여 서비스 제공 및 중간점검 실시)  -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 - 회기별 서비스 제공 기록지 작성  - 서비스 당일 2회 연속제공 불가 (단, 보강만 허용)  - 서비스 중간점검  · 서비스 계약 기간(1년)을 기준으로 서비스 제공 1/2시점에 제공인력에 의해 실시.  · 이용자 및 이용자 가족의 욕구변화  · 초기 서비스 목표에 따른 이용자의 변화 정도, 추후개입 계획과 제공 서비스의 지속여부, 서비스 변경 내용 등을 기록한 중간평가서 작성</p> <p>③ <b>3단계</b> : 서비스 종료 단계  (*서비스 제공 종료 및 재 욕구조사)  - 사후검사(필수실시-사전검사와 동일한 심리평가도구를 활용하여 이용자 변화 측정 및 분석결과 제시)  - 사후 심리검사 결과를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종결상담과 종결보고서 작성  - 이용자 및 보호자에 대한 서비스 재욕구조사  - 종료 시점(계약 기간 만료일, 단, 기타 사항으로 종료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함)  - 서비스 종료 통보</p>								
<p>⑥ <b>집단규모</b></p>	<p>○ 기본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단규모는 제공인력 1명당 1인의 이용자 이용 (1:1)을 원칙으로 함.  ○ 단, 집단서비스가 1:1 서비스 보다 효과적일 경우 예외적으로 제공인력 소견서, 보호자 동의서를 구비한 경우에 한하여 소집단 프로그램(1:2~1:3)허용.  ○ 소집단(1:2)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70분으로 프로그램 50분, 부모상담 20분으로 배분  ○ 소집단(1:3) 프로그램의 제공시간은 회당 총 90분으로 프로그램 60분, 부모상담 30분으로 배분  ○ 서비스 집단규모가 1:2인 이상일 경우,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(소재지)를 필히 작성</p>								
<p>⑦ <b>서비스 실시지역</b></p>	<p>○ 전 구군</p>								
<p>⑧ <b>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</b></p>	<p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 ○ 슈퍼바이저 지정기준 : 제공기관은 반드시 상근근무(전일제) 인력을 슈퍼바이저로 지정하여야 함.  ※ 현재 등록된 제공기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슈퍼바이저 반드시 지정(유예기간 종료)  - 슈퍼바이저 지정 등록 양식은 ‘사회서비스 제공자 등록사항 변경신청서(제16호 서식)’ 활용  - 슈퍼바이저 등록 시, 학위 및 경력증명서 등 슈퍼바이저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 첨부  ○ 진단서, 부모보고검사결과지, 소견서요약본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. 단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가능 (재판정의 경우 전문가보고 검사도구는 검사일로부터 1년6개월 이내 가능)  ※ 부모보고검사와 전문가보고검사는 동일한 검사자가 검사 후 진단서(혹은 소견서)를 작성하여야 함.  ○ 제공인력 경력기간 산정(상근근무경력 인정)  - 5년 : 9,600시간, 7년 : 13,440시간  ○ [별표3] 아동·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사전, 사후 검사의 심리평가도구  -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계획 수립 시 사전검사는 [별표 3]에서 제시하는 심리평가도구를 2개 이상 활용함 (단, 점수화 또는 등급화가 가능한 표준화된 객관적 평가도구와 치료사가 서술식으로 기술하는 주관적 심리평가도구 각각 1개 이상 활용)  - 만 3세 이하의 유아인 경우는 객관적 평가도구의 활용은 제외할 수 있음  - 사전검사와 사후검사는 동일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평가함  - 서비스 대상의 진입 시 욕구판단을 위해 사용한 심리평가도구([별표 3]의 공통에 포함되는 심리평가도구)는 사전검사로 활용 가능함.  - 제공기관은 심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이용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고 해당 자료를 보관·관리함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38 1787 1473 1977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서비스 영역</th> <th>심리평가도구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2">기본 서비스</td> <td>객관적 검사</td> <td>PRES, REVT, SELSI, U-TAP(APAC), P-FA, 덴버검사, K-YSR, MMPI, K-CBCL, K-ARS, RCMAS, K-PRC, K-CYP</td> </tr> <tr> <td>주관적 검사</td> <td>놀이평가(상호작용기능평가, 언어자발화 분석), HTP, K-HTP, KFD, SCT, KSD, MT-MAP, IMTAP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서비스 영역	심리평가도구	기본 서비스	객관적 검사	PRES, REVT, SELSI, U-TAP(APAC), P-FA, 덴버검사, K-YSR, MMPI, K-CBCL, K-ARS, RCMAS, K-PRC, K-CYP	주관적 검사	놀이평가(상호작용기능평가, 언어자발화 분석), HTP, K-HTP, KFD, SCT, KSD, MT-MAP, IMTAP
구분	서비스 영역	심리평가도구							
기본 서비스	객관적 검사	PRES, REVT, SELSI, U-TAP(APAC), P-FA, 덴버검사, K-YSR, MMPI, K-CBCL, K-ARS, RCMAS, K-PRC, K-CYP							
	주관적 검사	놀이평가(상호작용기능평가, 언어자발화 분석), HTP, K-HTP, KFD, SCT, KSD, MT-MAP, IMTAP							

### 3 [130108]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

항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아동·청소년 시기의 체계적인 사회·문화 활동 및 자기주도력 향상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하고, 책임감 있는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 지원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 령 : 만7세~만15세 이하</li> <li>○ 우선순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규이용자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)</li> <li>2.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</li> </o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드림스타트, 구·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선발</li> <li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아동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상담사, 초·중등학교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임상심리사, "사회복지사업법"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(이하 "사회복지사"), "국가기술자격법"에 따른 직업상담사</li> <li>2.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 교육론을 이수하고 "평생교육법"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자격 취득한 자</li> <li>3. 심리학·아동청소년학·교육학·사회복지학과, 이공계 및 자연과학계열 교육관련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4. "자격기본법" 제17조에 의한 아동·청소년 라이프코칭·리더십·커리어코칭·자기주도 학습코칭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아동비전형성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li> <li>5. 글로벌아동홈스쿨 제공인력은 한국 2년이상 거주한 결혼이민자 여성 중 국제어 사용 혹은 국제어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국가 출신의 전문대졸 이상 또는 국제어 관련학과 전문대졸 이상, 민간자격증 소지자 (방과후강사양성과정수료, 어린이영어지도사과정수료, TESOL자격증수료)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기준가격 : 14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26천원</td> <td>112천원</td> <td>98천원</td> <td>84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4천원</td> <td>28천원</td> <td>42천원</td> <td>56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168천원까지 가능 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li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26천원	112천원	98천원	84천원	본인부담금	14천원	28천원	42천원	56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26천원	112천원	98천원	84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4천원	28천원	42천원	56천원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내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. 비전형성 기본 유형              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① 리더십프로그램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② 진로탐색프로그램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</td> </tr> </table> </td> <td rowspan="2" style="border: none; vertical-align: middle;">           주2회 회당 90분 (월8회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2. 글로벌아동홈스쿨              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</td> </tr> </table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서비스횟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구·군의 사전승인 후 서비스 진행 가능</li> </ul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비전형성 기본 유형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① 리더십프로그램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② 진로탐색프로그램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</td> </tr> </table>	① 리더십프로그램	② 진로탐색프로그램	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	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	주2회 회당 90분 (월8회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글로벌아동홈스쿨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</td> </tr> </table>	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	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	
1. 비전형성 기본 유형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① 리더십프로그램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② 진로탐색프로그램</td> </tr> <tr> <td style="border: none;">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</td> <td style="border: none;">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</td> </tr> </table>	① 리더십프로그램	② 진로탐색프로그램	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	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	주2회 회당 90분 (월8회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
① 리더십프로그램	② 진로탐색프로그램																				
③ 자기주도 학습프로그램	④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																				
2. 글로벌아동홈스쿨 <table style="width: 100%; border: none;"> <tr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</td> <td style="width: 50%; border: none;">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</td> </tr> </table>	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	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																			
① 글로벌 인재 양성 및 자질 함양 과정	②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 과정																				



항목	내 용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비전형성 기본유형으로 프로그램 계획시, 리더십프로그램 및 진로탐색프로그램 필수구성</li> <li>▶ 글로벌아동홍스쿨로 프로그램 계획시, 글로벌인재양성 및 자질함양과정, 글로벌 문화의 이해 및 놀이체험과정 모두 필수구성 (※단순 영어학습 지도서비스 제공불가)</li> <li>▶ 서비스 내용 관련 12개월에 대한 워크북, 자료집 등 필수 제공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매월 아동 서비스 제공 보고서를 보호자에게 통보</li> <li>③ 이용자 대상 서비스 효과 검증(소감문, 감상문 등)을 위한 결과물 취합</li> <li>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종결 리포트 작성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롤링 페이지, 자기 리포트, 사회 공헌활동 등 종결 프로그램 실시</li> </ul> </li> </ol> <p>※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진로준비행동검사) 의무실시</p> <p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 <p>※ 아동 비전형성 지원서비스는 아동 및 청소년이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미래 비전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진로탐색을 통해 직업의 기능 및 중요성을 이해하고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단순 학습프로그램으로 서비스 제공은 기준정보(서비스내용) 미준수 임.</p>
⑥ 집단규모	<p>○ 비전형성 기본 유형 또는 글로벌아동홍스쿨은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2인 이내 (1:1~1:12)</p> <p>※ 집단규모가 1:2이상일 경우,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(소재지)를 필히 기입</p>
⑦ 서비스 실시지역	○ 전 구·군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+ 집단활동형(집단활동형은 서비스 제공 중 필요시에만 활용가능)

#### 4 [990108] 아동 체험활동 지원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아동을 대상으로 교과 및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라이프코칭으로 올바른 가치관 형성과 정서발달을 지원하고 집단활동을 통한 사회성 향상과 자기 주도적 리더로서의 성장을 도모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령 : 만7세~만12세(초등학생)</li> <li>○ 우선순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규이용자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)</li> <li>2. 두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</li> </o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드림스타트, 구·군 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선발</li> <li>※ 우선순위별 세부순위는 아동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청소년상담사, 초등정교사, 전문상담교사, 임상심리사, “사회복지사업법”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(이하 “사회복지사”)</li> <li>2. “평생교육법” 제24조에 따른 평생교육사로서 아동교육론 또는 청소년교육론을 이수한 자</li> <li>3. 심리학·아동청소년학·교육학과 학사학위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4.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아동·청소년라이프코칭·리더십·커리어코칭·자기주도학습코칭 관련 민간 자격증 취득 후 아동체험활동지원서비스 관련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li> <li>5. “청소년기본법”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(이하 “청소년지도사”)</li> <li>6. 인문학, 사회과학, 관광학, 아동청소년학, 교육학, 자연과학 전문학사 이상으로 아동·청소년 체험 분야 서비스제공 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18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구분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1등급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2등급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3등급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62천원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26천원</td> <td>108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8천원</td> <td>36천원</td> <td>54천원</td> <td>72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216천원까지 가능 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li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26천원	108천원	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54천원	72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26천원	108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54천원	72천원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내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         1.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(필수)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서발달,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</li> <li>② 예절교육, 인성강화 프로그램</li> <li>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(가족, 직업, 역사, 국가관 등)</li> </ol> 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          월2회            회당 8시간            *1일 1회           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2. 사회성 증진 활동(선택)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: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</li> <li>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</li> </ol>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(필수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서발달,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</li> <li>② 예절교육, 인성강화 프로그램</li> <li>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(가족, 직업, 역사, 국가관 등)</li> </ol>	월2회 회당 8시간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사회성 증진 활동(선택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: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</li> <li>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</li> </ol>						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	
1. 아동 라이프코칭 활동(필수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서발달, 감수성 향상 프로그램</li> <li>② 예절교육, 인성강화 프로그램</li> <li>③ 올바른 가치관 형성 지원 프로그램(가족, 직업, 역사, 국가관 등)</li> </ol>	월2회 회당 8시간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				
2. 사회성 증진 활동(선택)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아동의 비전형성 지원 프로그램 : 팀별 현장 체험과 토의 등 다양한 미션 수행</li> <li>② 조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현장 놀이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	

항목	내용
	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연간 계획서 보호자에게 배부</li> <li>③ 매월 아동에 대한 서비스 계획·결과(소감문, 감상문 등) 결과물 취합·배부</li> <li>④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자아존중감척도 또는 사회성척도검사) 의무실시</p> <p>※ 프로그램 실시 아동들의 활동 결과물에 대한 전시회, 발표회 실시</p> <p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
⑥ 집단규모	○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5인 이내 (1:1~1:15)
⑦ 서비스 실시지역	○ 전 구·군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○ 서비스 형태 : 집단활동형

## 5 [190108] 실버 맞춤형 활동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생활 및 문화예술 여가 지원으로 실질적 기량 증진과 사회참여 촉진을 통한 아름답고 건강한 노년생활의 영위를 지원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<u>150%</u> 이하</li> <li>○ 연 령 : 만60세 이상</li> <li>○ 우선순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규이용자(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최초 이용자)</li> <li>2. 1인 가구</li> </ol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구·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는 우선 선발</li> <li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ul> 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문화활동 관련(미술, 음악,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)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2.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3. 문화활동 관련 교원자격증을 취득한 자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10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3 1064 1457 1384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<u>120%초과~140%이하</u></td> <td>중위소득 <u>140%초과~150%이하</u>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90천원</td> <td>80천원</td> <td>70천원</td> <td>60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0천원</td> <td>20천원</td> <td>30천원</td> <td>40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0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<u>120%초과~140%이하</u>	중위소득 <u>140%초과~150%이하</u>	정부지원금	90천원	80천원	70천원	60천원	본인부담금	10천원	20천원	30천원	40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<u>120%초과~140%이하</u>	중위소득 <u>140%초과~150%이하</u>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90천원	80천원	70천원	60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0천원	20천원	30천원	40천원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내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1 1525 1453 1995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         1.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민속공예, 원예, 십자수, 퀼트 등</li> <li>② 악기교습, 바둑교실, 당구교실,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</li> </ul> </td> <td row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          주2회 회당 60분 (월8회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2.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술, 도자기, 서예, 음악, 동화구연 등</li> <li>② 풍물, 국악, 전통무용, 사교댄스, 뽀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</li> </ul>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3.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(필수)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체 합창단, 전시회, 발표회 등 운영</li> <li>② 각종 경진대회, 외부 전시회, 발표회 등 참여지원</li> </ul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상시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민속공예, 원예, 십자수, 퀼트 등</li> <li>② 악기교습, 바둑교실, 당구교실,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</li> </ul>	주2회 회당 60분 (월8회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술, 도자기, 서예, 음악, 동화구연 등</li> <li>② 풍물, 국악, 전통무용, 사교댄스, 뽀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</li> </ul>	3.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(필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체 합창단, 전시회, 발표회 등 운영</li> <li>② 각종 경진대회, 외부 전시회, 발표회 등 참여지원</li> </ul>	상시				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	
1. 생활여가 지원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민속공예, 원예, 십자수, 퀼트 등</li> <li>② 악기교습, 바둑교실, 당구교실, 명상 수련 등 취미 기량증진서비스</li> </ul>	주2회 회당 60분 (월8회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				
2. 문화예술여가 지원서비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미술, 도자기, 서예, 음악, 동화구연 등</li> <li>② 풍물, 국악, 전통무용, 사교댄스, 뽀리댄스 등 문화예술 기량증진 서비스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
3. 사회참여 지원서비스 (필수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체 합창단, 전시회, 발표회 등 운영</li> <li>② 각종 경진대회, 외부 전시회, 발표회 등 참여지원</li> </ul>	상시																				

항목	내용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단순 운동 및 손유희, 스트레칭, 노래 등 서비스 제공 불가</li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li>③ 사회참여지원서비스 상시제공(연1회 이상) : 자체 기량 경진대회, 발표회, 전시회 등 또는 외부경진대회, 전시회, 발표회 등의 참여 지원</li> </u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ul> </li> <li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생활만족도 검사) 의무실시</li> <li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li> </ul>
⑥ 집단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시설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20인 이내 (1:1~1:20)</li> <li>○ 노인이용시설(경로당 등)에서 서비스 제공시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(1:1~1:10)</li> <li>※ 집단규모가 1:2인 이상일 경우,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장소(소재지) 필수 기재</li> </ul>
⑦ 서비스 실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구·군</li> </ul>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(제공기관 선택)</li> </ul>

## 6 [190208] 실버 심리지원 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노년의 각종 심리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으로 스트레스 완화, 우울증 해소와 정서안정 지원, 다양한 사회참여활동을 통한 치매예방, 사회성 강화로 노후의 생활건강을 증진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<u>150%이하</u></li> <li>○ 연 령 : 만65세 이상</li> <li>○ 선정기준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노인폭행·학대·방치 및 사회적고립 등에 따른 긴급심리지원대상자 (구·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)</li> <li>2. 치매, 우울증, 스트레스, 자살충동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는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, 임상심리사소견서, 정신보건전문요원1급소견서, 보건소장·정신보건센터장 추천이 있는 경우</li> <li>3. 치매(치매간이선별검사MMSE-DS, CDR, ADL, 7분치매검사),우울증(노인우울증간이검사 GDS-K, Beck우울증검사, 정신신경증상척도), 자살생각척도 중 증상에 맞춰 어느 하나를 활용한 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경우(검사결과지 제출)</li> </ol> </li> <li>○ 우선순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구·군 또는 읍면동 통합사례관리대상자 또는 노인 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대상자</li> <li>2. 우울증, 스트레스, 자살충동 등 병원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검사결과 위험군으로 선별되어 추천된 자 (진단서, 소견서첨부)</li> <li>3. 치매, 우울증, 자살생각척도검사결과 절단점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/ul> <p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1인가구, 소득수준 순</p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리상담, 심리치유, 인지향상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”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(이하 “정신보건전문요원”), “국가기술자격법”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</li> <li>② 심리, 상담, 음악치료학, 미술치료학, 놀이치료학, 행동치료학 등 인간발달서비스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1년 이상</li> <li>-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</li> <li>-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③ “자격기본법” 제17조에 의한 언어치료, 미술치료, 음악치료, 행동치료, 놀이치료, 심리 상담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노인 심리지원 상담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li>2.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제공인력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사회복지사, 예술심리치료사, 심리상담사, 예술전공교원자격증 소지자, 라이프코칭 자격증 또는 교육이수자</li> <li>② 문화활동 관련(미술, 음악, 체육과 같은 예체능분야) 학사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③ 문화활동 관련 국가자격증 소지자 또는 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소지자로서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16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 140%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28천원</td> <td>112천원</td> <td>96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6천원</td> <td>32천원</td> <td>48천원</td> <td>64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0개월, 재판정1회(만65세 이상 위험군)</li> <li>※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 140%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44천원	128천원	112천원	96천원	본인부담금	16천원	32천원	48천원	64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 140%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44천원	128천원	112천원	96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6천원	32천원	48천원	64천원																	

항목	내용						
<p>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</p>	<p>○ 서비스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9 324 1460 1160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59 324 1241 380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241 324 1460 380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59 380 1241 548">           1.심리상담서비스            ① 개별상담: 사례관리 및 상담(월1회,1:1)            ② 집단상담: 사례관리 및 상담(월1회,1:3이내)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41 380 1460 548">           월1회            회당 60분            (주1회)            *1일 1회           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59 548 1241 1160">           2.심리치유서비스: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(1:1)            ① 심리치유: 우울증, 생활스트레스,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           ② 정서안정: 심리적 불안장애, 트라우마 등 치유·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           3.인지향상서비스 (1:1)           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          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·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           4.사회참여서비스(월1회만 허용) (1:1~1:10)            ① 치매예방,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·예술 프로그램           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           :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(산책 등 야외활동)            ※ '심리치유서비스·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' 또는            '심리치유서비스·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+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' 로           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41 548 1460 1160">           월3회            회당 60분            (주1회)            *1일 1회           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li>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치매·우울증·자살생각척도, 생활만족도 중 2개 이상 실시) 의무 실시      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: 사례관리 및 상담(월1회,1:1) ② 집단상담: 사례관리 및 상담(월1회,1:3이내)	월1회 회당 60분 (주1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심리치유서비스: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(1:1) ① 심리치유: 우울증, 생활스트레스,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: 심리적 불안장애, 트라우마 등 치유·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.인지향상서비스 (1:1)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·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.사회참여서비스(월1회만 허용) (1:1~1:10) ① 치매예방,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·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: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(산책 등 야외활동) ※ '심리치유서비스·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' 또는 '심리치유서비스·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+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'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	월3회 회당 60분 (주1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
1.심리상담서비스 ① 개별상담: 사례관리 및 상담(월1회,1:1) ② 집단상담: 사례관리 및 상담(월1회,1:3이내)	월1회 회당 60분 (주1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
2.심리치유서비스: 각종 심리적인 문제에 대한 개별상담에 따른 치유프로그램(1:1) ① 심리치유: 우울증, 생활스트레스, 자살충동해소를 위한 심리치유활동 ② 정서안정: 심리적 불안장애, 트라우마 등 치유·극복을 위한 정서안정활동 3.인지향상서비스 (1:1) ① 퇴행성기억상실 및 치매 등 예방서비스 ② 심인성기억상실 등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기억장애 치유·안정을 위한 인지향상서비스 4.사회참여서비스(월1회만 허용) (1:1~1:10) ① 치매예방, 우울증해소와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·예술 프로그램 ② 사회성증진 등 대인관계 확대지원 프로그램 : 심리치유와 정서안정효과 극대화 대체활동(산책 등 야외활동) ※ '심리치유서비스·인지향상서비스 월 3회 제공' 또는 '심리치유서비스·인지향상서비스 월 2회 + 사회참여서비스 월1회' 로 두가지 방법 중 한가지 선택하여 서비스 진행	월3회 회당 60분 (주1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
<p>⑥ 집단규모</p>	<p>○ 심리상담서비스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3인 이내(1:1~1:3)          ○ 심리치유서비스, 인지향상서비스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(1:1)          ○ 사회참여서비스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(1:1~1:10)</p>						
<p>⑦ 서비스 실시지역</p>	<p>○ 전 구·군</p>						
<p>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</p>	<p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         -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(경로당) 이용 불가</p>						





항목	내용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○ 서비스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52 327 1465 568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52 327 1233 376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233 327 1465 376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52 376 1233 568">               1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                 ①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 등                  ② 체형교정(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)                2.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               ※ '의료법',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    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33 376 1465 568">               주1회                회당 60분                (월4회)    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근골격계질환증상조사) 의무실시          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(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) 2.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※ '의료법',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	주1회 회당 60분 (월4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
1. 근골격계, 신경계, 순환계 질환 개선을 위한 수기요법 ① 전신안마, 마사지, 지압, 발마사지, 운동요법 등 ② 체형교정(장애인 및 기타 질환자) 2. 기타 자극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※ '의료법', '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'에 저촉되지 않는 안마서비스 제공	주1회 회당 60분 (월4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
⑥ 집단규모	<p>○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(1:1 원칙)</p>				
⑦ 서비스 실시지역	<p>○ 전 구·군</p>				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<p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         - 서비스 제공장소로 노인이용시설(경로당) 이용 불가</p> <p>○ 서비스 제공장소 제한 : 기관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거동불편자 대상 재가방문 가능하며, 노인이용시설(경로당)에서의 서비스 제공 및 결제 불가</p>				

## 8 [070101]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
① 목적	지체 및 뇌병변, 척수장애 아동 등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대여하고 이를 지속 관리함으로써 기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정상적인 신체발달을 지원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제한없음</li> <li>○ 연 령 : 만 24세 이하 장애 아동·청소년</li> <li>○ 선정기준 :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·청소년</li> <li>2.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 청소년 (단 6세미만의 지체 및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</li> </ol> <p>* 「장애인복지법」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장애등급 판정을 수반하는 중복장애인의 경우 시·군·구에서 발행하는 “장애인등록증(부장애: 지체 및 뇌병변 장애)”을 제출하면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</p> <p>** 정신적 장애 : ① 발달장애(지적장애인, 자폐성장애인), ② 정신장애(정신장애인)</p> </li> </ul>																
③ 제공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조공학사, 의지·보조기 기사, 물리치료사, 작업치료사</li> <li>2.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자</li> <li>3. 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4. 석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장애인 재활공학·보조공학 관련 또는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분야 실무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/ol>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720천원/반기 (120천원/월)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 14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140%초과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648천원</td> <td>576천원</td> <td>504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72천원</td> <td>144천원</td> <td>216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 *장애아동이 2명 이상이 있는 가구의 경우 본인부담금 한 등급씩 하향조정 (3등급→2등급, 2등급→1등급), 재판정 5회(단, 신규이용자에게는 대기자 비율에 따라 시군구에서 재판정 결정)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4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40%초과	정부지원금	648천원	576천원	504천원	본인부담금	72천원	144천원	216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4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40%초과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648천원	576천원	504천원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72천원	144천원	216천원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내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</li> </ol> </li> <li>2. 점검 및 유지보수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기점검 : 반기별 최소 1회(예: 교환, 부품교체, 프레임 변경, 맞춤 보정 등)</li> <li>② 수시점검 :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(예: AS, 소모품교환, 수리, 교정 등)</li> </ol> </li> <li>3. 상담 및 정보제공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초기상담 :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,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,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, 치수측정 등</li> <li>② 수시상담 :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, AS 상담 등</li> </ol> </li> </ol> </td> <td style="vertical-align: middle; 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렌탈 12개월            정기점검: 연2회            수시점검: 제한없음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시작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 실시</li> <li>2. 2단계 : 계약체결, 맞춤형 보조기기 인도 및 대여 서비스 제공</li> <li>3. 3단계 : 점검 및 유지보수, 상담 및 정보제공, 교환·회수 등 사후관리(종료시 효과성을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신체불편정도조사) 의무실시</p> </li> </ul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</li> </ol> </li> <li>2. 점검 및 유지보수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기점검 : 반기별 최소 1회(예: 교환, 부품교체, 프레임 변경, 맞춤 보정 등)</li> <li>② 수시점검 :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(예: AS, 소모품교환, 수리, 교정 등)</li> </ol> </li> <li>3. 상담 및 정보제공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초기상담 :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,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,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, 치수측정 등</li> <li>② 수시상담 :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, AS 상담 등</li> </ol> </li> </ol>	렌탈 12개월 정기점검: 연2회 수시점검: 제한없음			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대상 장애 아동의 성장단계에 적합한 맞춤형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에 따른 맞춤지원서비스</li> </ol> </li> <li>2. 점검 및 유지보수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정기점검 : 반기별 최소 1회(예: 교환, 부품교체, 프레임 변경, 맞춤 보정 등)</li> <li>② 수시점검 : 정기점검 외 점검 및 유지보수(예: AS, 소모품교환, 수리, 교정 등)</li> </ol> </li> <li>3. 상담 및 정보제공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초기상담 : 대상 아동의 장애유형 및 상태 파악, 이용자 및 보호자 욕구조사, 적정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제공, 치수측정 등</li> <li>② 수시상담 : 보조기기 이용 상담 및 불만처리, AS 상담 등</li> </ol> </li> </ol>	렌탈 12개월 정기점검: 연2회 수시점검: 제한없음																
⑥ 집단규모	○ 해당없음 (단, 동일 제공인력이 담당하는 이용자 간 점검·유지보수 등 실제 서비스 시간 중복 금지)																
⑦ 서비스 실시지역	○ 전국																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○ 서비스 형태 : 재가방문형																

## 9 [280108] 건강증진 맞춤형운동 지도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건강취약계층의 건강상태 상담·점검을 통한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비 절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 령 : 만20세 이상</li> <li>○ 선정기준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있는 사람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 중 제출)</li> <li>2. 장애인, 12주 이상 임부(신청시 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중 제출), 출산 후 1년 미만 산모(신청시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)</li> <li>3. 만20세~65세 미만 중 심신의 문제 및 비만으로 운동을 요하는 자로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의사진단서, 소견서 또는 보건소장의 추천이 있는 사람(신청시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 중 제출)</li> </ol> </li> <li>※ 비만은 보건소 및 병원에서 체지방(인바디 등)을 측정하고 검사결과지를 제출(체지방률 여성은 39%이상, 남성은 25%이상이면 신청가능)</li> <li>4. 만65세 이상 노인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</li> </ul> </li> <li>○ 우선순위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신부전, 심부전, 고혈압, 당뇨, 갑상선, 고지혈증 질환자라는 의사의 진단서, 소견서, 추천서, 처방전 중 제출</li> <li>2. 장애인 (장애등급 순)</li> <li>3.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및 비만 중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자 (비만은 보건소 또는 병원에서 실시한 인바디 검사 결과지 제출 가능)</li> <li>4. 임부(12주 이상), 산모(출산 후 1년 미만)</li> </ol> </li> <li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모든 제공인력은 응급처치교육(4시간 이상)을 연1회 의무이수</li> <li>2. 운동서비스 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체육관련 교원자격증 소지자</li> <li>② 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”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(다만,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),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, 동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지도사(장애인대상에 한함), 동 시행령 제9조의5에 따른 노인스포츠지도사(노인대상에 한하며,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)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③ 체육학 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④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 자격기본법에 의한 해당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li>3. 건강교육 및 영양관련 프로그램 운영 제공인력은 “국민영양관리법” 제15조에 의한 영양사(이하 “영양사”), “초중등교육법 제21조”에 의한 초등 정교사(이하 “초등정교사”), “국민건강증진법” 제12조의2에 의한 보건교육사(이하 “보건교육사”), 간호사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장애인, 임부(임신 12주 이상), 산모(출산 후 1년 미만), 만성질환자(고혈압, 당뇨 등) : 180천원/월</li> </o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 <th>구분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62천원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26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8천원</td> <td>36천원</td> <td>54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li> <li>2. 만20세 이상 심신유약자 및 비만, 만65세 이상 노인 : 140천원/월</li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 <th>구분</th> <th>4등급</th> <th>5등급</th> <th>6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26천원</td> <td>112천원</td> <td>98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4천원</td> <td>28천원</td> <td>42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26천원	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54천원	구분	4등급	5등급	6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26천원	112천원	98천원	본인부담금	14천원	28천원	42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26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54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4등급	5등급	6등급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26천원	112천원	98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4천원	28천원	42천원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항목	내 용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p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1~3등급은 216천원까지, 4~6등급은 168천원까지 가능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p> <p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0개월</p>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p>○ 서비스 내용 : 이용 대상자 별 맞춤형 지도 서비스 제공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488 1465 1933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47 488 1177 548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177 488 1465 548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47 548 1177 824">           1. 장애인프로그램            1) 기본프로그램           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          2) 필수프로그램           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          - 놀이재활 프로그램 : 정서, 행동, 발달, 상호작용 촉진활동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177 548 1465 824">           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          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824 1177 1099">           2. 산모, 임산부 프로그램            1) 기본프로그램           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          2) 필수프로그램            -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           - 임산부요가,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177 824 1465 1099">           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          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1099 1177 1417">           3. 노인 프로그램            1) 기본프로그램           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          2) 필수프로그램            - 유산소 운동 :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, 근지구력, 평형성,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           -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, 댄스스포츠, 요가(필라테스) 등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177 1099 1465 1417">           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          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1417 1177 1693">           4.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           1) 기본프로그램           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          2) 필수프로그램 :           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           - 건강관리프로그램 :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, 정보제공(월1회만 허용)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177 1417 1465 1693">           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          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1693 1177 1933">           5. 일반인프로그램            1) 기본프로그램           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           2) 필수프로그램 : 유산소운동, 장비를 이용한 운동, 복싱, 태권도 등 스트레스 완화 운동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177 1693 1465 1933">           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          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장애인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- 놀이재활 프로그램 : 정서, 행동, 발달, 상호작용 촉진활동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산모, 임산부 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-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- 임산부요가,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3. 노인 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- 유산소 운동 :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, 근지구력, 평형성,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-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, 댄스스포츠, 요가(필라테스) 등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4.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: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- 건강관리프로그램 :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, 정보제공(월1회만 허용)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5. 일반인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: 유산소운동, 장비를 이용한 운동, 복싱, 태권도 등 스트레스 완화 운동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
1. 장애인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- 놀이재활 프로그램 : 정서, 행동, 발달, 상호작용 촉진활동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
2. 산모, 임산부 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 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- 수중운동 등 재활에 필요한 운동 지도 - 임산부요가, 라마즈 교육 등 건강증진 운동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
3. 노인 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- 유산소 운동 : 볼과 밴드를 이용한 근력, 근지구력, 평형성, 교차성 발달 지원 운동 - 전문장비를 활용한 운동지도 또는 수중운동, 댄스스포츠, 요가(필라테스) 등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
4. 만성질환자 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: - 유산소운동, 수중운동 등 건강유지에 필요한 운동 지도 - 건강관리프로그램 : 식사조절 및 건강 교육, 정보제공(월1회만 허용)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
5. 일반인프로그램 1) 기본프로그램 - 건강상담 : 혈액검사, 체성분 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 중 한가지 검사를 실시하고,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생활패턴과 건강상태 체크 2) 필수프로그램 : 유산소운동, 장비를 이용한 운동, 복싱, 태권도 등 스트레스 완화 운동	기본프로그램 : 반기별 1회 필수프로그램 : 주2회, 회당 90분 (월8회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

항목	내 용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건강상담 시, 개인별 운동지도서비스 제공에 대한 근거 서류(운동지도기록지 등)를 필히 작성</li> </ul> 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① 반기별 1회 기본프로그램 실시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u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혈액검사, 건강체력 측정/평가, 체성분검사 중 한가지 이상) 의무실시</li> <li>※ 집단규모가 1:2인 이상일 경우, 제공기록지에 서비스 제공장소(소재지)를 필히 기입</li> <li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</ul>
⑥ 집단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1~3등급 :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0인 이내 (1:1~1:10)</li> <li>○ 4~6등급 :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 (1:1~1:15)</li> <li>※ 노인이용시설(경로당)이용 운동 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8인 이내(1:1~1:8)</li> <li>※ 서비스제공을 위한 전용시설(수영장, 강좌 전용공간) 이용시 제공인력 1명당 서비스 이용자 15인 이내(1:1~1:15)</li> </ul>
⑦ 서비스 실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구·군</li> </ul>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 (제공기관 선택)</li> </ul>

## 10 [210108] 직업능력발달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장애인, 경력단절자, 청소년 등 일반인들의 직업생활준비(자격증 취득 등), 창업과 재취업에 필요한 자질과 능력 배양을 위한 서비스를 지원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 활성화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령 : 만14세~만64세 이하</li> <li>○ 우선순위 : 1. 경력단절(4대보험 가입확인서 또는 경력증명서) 또는 구직활동 중인 재(워크넷 등의 구직활동증명서) 2. 장애인</li> </ul> <p>※ 장애인 이용자 5% 필수 선정 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p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일반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2. 직업능력발달서비스로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부합하는 관련 전공자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전문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1년 이상</li> <li>② 학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6개월 이상</li> <li>③ 석사학위 취득 후 직업능력발달서비스 관련 실무경력 3개월 이상</li> </ul> </li> <li>3.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/ul> </li> <li>○ 장애인대상 서비스제공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회복지사, 특수학교교사 등 장애인재활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자</li> <li>2. “고등교육법”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, 교육학, 직업재활, 특수교육 또는 장애인 재활 관련학 학사 학위 취득 후 장애인 복지사업에 6개월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또는 “고등교육법”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후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</li> <li>3. 직업훈련 등 해당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4. 자격기본법에 따른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장애인복지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/ul> </li> </ul> <p>※ 공예자격증 중 토탈공예자격증은 제공인력 자격으로 인정 불가하며, 개별 공예자격증으로 등록 가능</p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20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5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5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120% 초과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 140% 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80천원</td> <td>160천원</td> <td>140천원</td> <td>120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20천원</td> <td>40천원</td> <td>60천원</td> <td>80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240천원까지 가능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12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 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 140% 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80천원	160천원	140천원	120천원	본인부담금	20천원	40천원	60천원	80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 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 140% 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80천원	160천원	140천원	120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20천원	40천원	60천원	80천원																	

항목	내용								
<p>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</p>	<p>○ 서비스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7 338 1455 831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47 338 1262 376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262 338 1455 376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47 376 1262 465">           1.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          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62 376 1455 465">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465 1262 779">           2.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           ① 장애인 프로그램 : 직업재활 프로그램, 사회성,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           ② 일반인 프로그램            -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           -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(자격증과정, 강사과정 등)            -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           - 사회성,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(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)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62 465 1455 779">           주2회(월8회)            회당 120분            (장애인 1:1 서비스는 90분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7 779 1262 831">           3. 각종 전시회, 판매회,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62 779 1455 831">           상시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		2.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: 직업재활 프로그램, 사회성,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-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-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(자격증과정, 강사과정 등) -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- 사회성,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(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)	주2회(월8회) 회당 120분 (장애인 1:1 서비스는 9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3. 각종 전시회, 판매회,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	상시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
1. 직업능력 배양 과목 이론 강좌 및 실습 ① 서비스 이론 강좌 및 실습 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각종 정보 제공									
2. 직업 재활 및 능력발달 프로그램 ① 장애인 프로그램 : 직업재활 프로그램, 사회성, 정서강화 지원프로그램 ② 일반인 프로그램 - 진로육구조사 및 적성검사 필수실시 - 창업 및 재취업을 위한 직업능력발달 프로그램(자격증과정, 강사과정 등) - 직업체험활동 프로그램 - 사회성, 정서강화 지원 프로그램(장애인과 일반인 공동 실습 등 부가활동)	주2회(월8회) 회당 120분 (장애인 1:1 서비스는 9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
3. 각종 전시회, 판매회, 박람회 등 사회참여지원 프로그램	상시								
<p>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</p>	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</li> <li>③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li>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이용자 대상 사전검사(진로육구조사와 적성검사), 사후검사(자격증 취득현황과 이용 만족도) 의무실시          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								
<p>⑥ 집단규모</p>	<p>○ 장애인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(1:1~1:5)          ○ 일반인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(1:1~1:10)</p>								
<p>⑦ 서비스 실시지역</p>	<p>○ 전 구·군</p>								
<p>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</p>	<p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         ○ 식품·위생 관련 프로그램 진행 시, 대표 및 해당 제공인력은 서비스 개시 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 (건강진단 대상자)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 하고 이후 매년 1회 건강진단 필수 실시(건강진단 검진일 기준)          ※ 필수건강진단 항목 : 장티푸스, 폐결핵, 전염성 피부질환</p>								

# 11 [170108] 부모학교 서비스

항목	내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전문 심리상담과 교육을 통한 가족 정서 회복과 유대감 향상으로 가족 기능을 강화하고, 자녀 양육에 필요한 지식, 능력, 태도 등을 지도하여 효과적인 부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령 : 부모, 예비부모(결혼한 성인), 조부모</li> <li>※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성인(청년)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</li> <li>○ 우선순위 :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 정신과)진단서</li> <li>2. 우울증, 스트레스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소견서</li> <li>3. 두 자녀 이상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</li> <li>4. 이혼숙려기간 부모 (신청시 접수증명서 제출)</li> <li>5. 첫아이 가구의 부모 또는 조부모</li> </ol> <li>※ 우선순위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적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li>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상담학, 심리학, 미술치료학, 놀이치료학의 상담이나 교육관련 전임강사 또는 학위 취득 후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대학에서 상담이나 교육관련 강의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2.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상담학, 심리학, 미술치료학, 놀이치료학 학사학위 이상자로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3. 사회복지학, 가정학, 상담학, 심리학, 미술치료학, 놀이치료학 석사학위 이상 취득 후 가족상담분야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(부모교육자격증, 가족상담전문자격증 소지자)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20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 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미인자</td> <td>중위소득120%초과 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140%초과 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80천원</td> <td>160천원</td> <td>140천원</td> <td>120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20천원</td> <td>40천원</td> <td>60천원</td> <td>80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24만원까지 가능 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li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6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미인자	중위소득120%초과 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 ~150%이하	정부지원금	180천원	160천원	140천원	120천원	본인부담금	20천원	40천원	60천원	80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미인자	중위소득120%초과 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 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80천원	160천원	140천원	120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20천원	40천원	60천원	80천원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내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8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리상담 프로그램 (필수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모와 자녀,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,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(부부클리닉,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, 해소·치유)</li> </ol> </li> <li>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, 태도 등 교육</li> <li>② 부부관계 이해교육</li> <li>③ 부부소통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li>3. 부모·자녀 관계 프로그램 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모·자녀 애착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</li> <li>② 부모·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li>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 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</li> <li>②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</li> <li>③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/ol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          월4회(주1회)            (필수 월3회 이상,            선택 월1회 이하)             *1일 1회           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'필수 월 3회 + 선택 월 1회' 또는 '필수 월 4회'로 서비스 구성(필수 집단규모1:1, 선택 집단규모 1:1~1:5)</li> </ul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리상담 프로그램 (필수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모와 자녀,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,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(부부클리닉,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, 해소·치유)</li> </ol> </li> <li>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, 태도 등 교육</li> <li>② 부부관계 이해교육</li> <li>③ 부부소통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li>3. 부모·자녀 관계 프로그램 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모·자녀 애착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</li> <li>② 부모·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li>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 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</li> <li>②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</li> <li>③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/ol>	월4회(주1회) (필수 월3회 이상, 선택 월1회 이하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리상담 프로그램 (필수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모와 자녀,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한 불화를 조정하여 이해와 화목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지원 서비스, 배우자 등 가족사망 등 우울증 치유 (부부클리닉, 고부간의 갈등 등의 상담, 해소·치유)</li> </ol> </li> <li>2. 자녀 양육 및 건강한 부부생활 교육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녀양육에 필요한 지식, 태도 등 교육</li> <li>② 부부관계 이해교육</li> <li>③ 부부소통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li>3. 부모·자녀 관계 프로그램 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부모·자녀 애착 및 관계증진 프로그램</li> <li>② 부모·자녀 상호작용 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li>4. 가족공동체 기능향상 프로그램(부모자조모임) (선택)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가족관계 향상을 위한 참여 프로그램</li> <li>② 양육스트레스 지원 프로그램</li> <li>③ 가족역할 정립 및 치유 프로그램</li> </ol> </li> </ol>	월4회(주1회) (필수 월3회 이상, 선택 월1회 이하) 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				



항목	내용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/li> <li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부모자녀관계척도) 의무실시 (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이용자는 사전·사후검사로 K-PSI척도 허용)</li> <li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li> </ul>
⑥ 집단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심리상담 프로그램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(1:1원칙)</li> <li>○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<u>5인 이내 (1:1~1:5)</u></li> <li>※ 집단규모 1:1은 60분, 1:2이상은 120분 서비스 제공</li> </ul>
⑦ 서비스 실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구·군</li> </ul>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</li> </ul>

## 12 [170308] 임신부 생활건강지원서비스

항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산전·산후 우울증 예방 및 정서안정 지원으로 산모의 자존감 향상,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스트레스 경감과 산모의 생활건강 증진으로 출산과 양육을 장려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<u>150% 이하</u></li> <li>○ 연 령 : 제한없음</li> <li>○ 선정기준 : 임신 12주 이상 임부 또는 출산 후 2년 미만 산모 (출산 전)산모수첩, 임신확인서 등, (출산 후)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서류 필요)</li> <li>※ 부모학교서비스, 건강증진맞춤운동지도서비스, 사랑나눔안마서비스, 성인(청년)심리지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</li> <li>○ 우선순위 : 1. 미혼모, 한부모, 2. 첫아이가구, 3. 다문화가정, 4. 기초생활수급자</li> <li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심리상담 제공인력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리, 상담, 음악치료학, 미술치료학 등 심리상담 관련 전공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자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학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- 석사학위 취득 후 실무 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/ul> </li> <li>② “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”제1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(이하 “정신보건전문요원”), “국가기술자격법” 제8조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임상심리사</li> </ol> </li> <li>2. 산모학교서비스 제공인력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산후관리사, “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”에 의한 영양사, 간호사, 간호조무사 중 임신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② 아동복지학, 아동학, 유아교육학, 보육학, 가족복지학 등 관련학과 학사 이상으로 “영유아보육법” 제 21조에 의한 보육교사, “유아교육법” 제22조2항에 의한 유치원정교사 중 한가지 이상 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교육 또는 신생아 관리 관련 교육 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li>3.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인력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자격기본법 제17조에 의한 태교, 문화활동 관련 민간자격증 취득 후 임신부 대상 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② “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”에 의한 영양사 중 임신부 교육관련 경력 3개월 이상인 자</li> <li>③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</li> <li>④ “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” 제9조에 따른 스포츠지도사(다만, 자격종목과 서비스 제공종목은 동일하여야함), 동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증 취득 후 운동지도경력 1년 이상인 자</li> <li>⑤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증 과정에 없는 종목의 경우(요가, 필라테스, 아쿠아로빅 등)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</li> </ol> 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p>○ 서비스 가격 : 160천원/월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e1f2;"> <th>구분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120%초과 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140%초과 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28천원</td> <td>112천원</td> <td>96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6천원</td> <td>32천원</td> <td>48천원</td> <td>64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상향, 192천원까지 가능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 ○ 서비스 제공기간 : 6개월(서비스 신청 후 10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), 재판정 1회(우울증 고위험군) ※ 재판정은 서비스가 종료된 후 2년 이내에 신청할 경우만 인정</p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 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 ~150%이하	정부지원금	144천원	128천원	112천원	96천원	본인부담금	16천원	32천원	48천원	64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 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 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44천원	128천원	112천원	96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6천원	32천원	48천원	64천원																	

항목	내 용								
<p>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</p>	<p>○ 서비스 내용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343 338 1453 925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343 338 1241 394">서비스 내용</th> <th data-bbox="1241 338 1453 394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343 394 1241 521">           1. 심리지원서비스           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          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41 394 1453 521">           월2회(주1회)            (회당 50분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3 521 1241 685">           2. 산모학교서비스           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신부 위생교육           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           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41 521 1453 685">           월2회(주1회)            (회당 50분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 data-bbox="343 685 1241 925">           3. 건강증진서비스           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           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신부체조           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           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         </td> <td data-bbox="1241 685 1453 925">           월2회(주1회)            (회당 50분)           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 산모 이용자의 병원 입원, 출산 외에는 서비스를 임의로 중단 또는 지연 금지</p> <p>※ 서비스의 내용에 따라 심리지원서비스 및 산모학교·건강증진서비스 각각의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수혜 가능</p> <p>※ 심리지원 또는 산모학교·건강증진서비스 각각 별도 제공기관을 선택가능하나 반드시 두 가지 서비스 모두 이용하여야 함 (※1개 서비스만 이용 불가)</p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	월2회(주1회) (회당 5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신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	월2회(주1회) (회당 5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3.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신부체조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	월2회(주1회) (회당 5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
1. 심리지원서비스 ① 출산 전·후 우울증 예방, 공포심 해소 등을 위한 심리상담 ② 출산 전·후 신체·환경변화 등에 따른 우울증 치유 상담 등	월2회(주1회) (회당 5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
2. 산모학교서비스 ① 산전교육: 태교, 출산교육, 임신부 위생교육 ② 산후교육: 신생아관리 위생교육, 베이비마사지, 이유식만들기 등 ③ 식단관리: 건강 이상증후에 따른 개인 맞춤형 건강식 제공, 식단관리 등	월2회(주1회) (회당 5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
3. 건강증진서비스 ① 정서안정: 심신안정과 정서함양을 위한 서비스(명상·태교 교실) ② 건강체조: 가벼운 생활스트레칭, 임신부체조 ③ 체형교정: 출산 전·후 체형관리(골반교정, 안마 등)를 위한 부가서비스 ※체형교정 서비스는 '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한 안마사'만 제공가능함.	월2회(주1회) (회당 5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
<p>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</p>	<p>○ 서비스 제공절차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이용자가 2개의 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, 반드시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관 정보를 파악하여 기재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리지원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</li> <li>- 산모학교서비스 또는 건강증진 서비스 월 2회 필수 실시</li> </ul> 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ol> </li> </ul> </li> <li>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ol> <p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우울증 자가척도 또는 양육스트레스 척도(K-PSI)) 의무실시</p> <p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p>								
<p>⑥ 집단규모</p>	<p>○ 심리상담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(1:1 원칙)</p> <p>○ 심리상담 외 :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5인 이내 (1:1~1:5)</p>								
<p>⑦ 서비스 실시지역</p>	<p>○ 전 구군</p>								
<p>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</p>	<p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또는 재가방문형(제공기관 선택)</p> <p>○ 제공기관 등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심리지원서비스 제공기관 또는 산모학교·건강증진서비스 제공기관은 분리등록 가능</li> </ul> <p>※ 1개 서비스만 진행하는 기관의 경우 반드시 서비스 명에 병기하여 표기</p>								

### 13 [190308] 생활영농기술지원서비스

항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베이비붐세대의 은퇴설계 지원에 따른 생활영농기술 교육 및 체험 서비스를 통하여 도심 속 전원생활의 여가, 정서안정과 귀농·귀촌을 지원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제한없음</li> <li>○ 연 령 : 만40세~만70세</li> <li>○ 선정기준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도심 속에서 전원생활의 여가 및 정서안정을 위한 설계하고 있는 가구</li> <li>2. 퇴직 후의 은퇴설계 등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</li> </ol> </li> <li>○ 우선순위 : 제한없음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농업을 전공한 전문학사 이상으로 1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</li> <li>2. 농업, 특수작물, 생활농업, 도시농업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(경작사실확인서, 농산물납품확인서 등으로 경력 확인)</li> <li>3. 영농조합에 가입하고 관련사업에 2년 이상 종사한 자</li> <li>4. 기타생활영농서비스 종사자로 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○ 서비스 가격 : 180천원/월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 <th style="width: 10%;">구분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1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2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3등급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 120% 초과 ~140% 이하</td> <td>중위소득 140% 초과~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62천원</td> <td>144천원</td> <td>132천원</td> <td>108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18천원</td> <td>36천원</td> <td>48천원</td> <td>72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 초과 ~140% 이하	중위소득 140% 초과~	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32천원	108천원	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48천원	72천원
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
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	중위소득 120% 이하 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기초연금수급자가 아닌 자	중위소득 120% 초과 ~140% 이하	중위소득 140% 초과~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62천원	144천원	132천원	108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18천원	36천원	48천원	72천원																	
○ 서비스 제공기간 : 3개월 (서비스 신청 후 5개월 내 서비스 이용 가능)				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○ 서비스 내용					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 <th style="width: 8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          1.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          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: 경계목, 담쟁이, 계절초 등 수목 설치           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: 상자텃밭, 옥상텃밭, 농장텃밭 등           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: 각종 영농 자재·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         </td> <td rowspan="4"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middle;">           월3회(주1회) (회당 6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2. 농작물,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           ① 천연비료·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: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, 유기비료, 천연농약            ② 원예관리 과정 :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,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           ③ 과수목 관리 과정 :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, 접붙이기 등 실습·관리 과정            ④ 관상용 화초·토종작물 재배 :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, 토종 작물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3.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          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          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(거위, 오리, 닭 등)         </td> </tr> <tr> <td>           4. 생활영농 심화 체험            ① 산나물, 야생버섯, 취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           ② 버섯재배, 건강 차 생산 실습            ③ 향토(저장) 음식 생산과정 (두부, 콩발효, 김치, 장아찌 등) 등 농촌문화 체험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1.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: 경계목, 담쟁이,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: 상자텃밭, 옥상텃밭,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: 각종 영농 자재·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	월3회(주1회) (회당 6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2. 농작물,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·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: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, 유기비료,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: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,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: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, 접붙이기 등 실습·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·토종작물 재배 :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, 토종 작물	3.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(거위, 오리, 닭 등)	4.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, 야생버섯, 취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,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(저장) 음식 생산과정 (두부, 콩발효, 김치, 장아찌 등) 등 농촌문화 체험													
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
	1. 도심 전원환경 조성 과정 ① 전원주택 생활환경 조성 : 경계목, 담쟁이, 계절초 등 수목 설치 ② 여가생활을 위한 텃밭 조성 : 상자텃밭, 옥상텃밭, 농장텃밭 등 ③ 생활영농장비 사용교육 : 각종 영농 자재·장비 및 도구 사용 요령	월3회(주1회) (회당 6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																			
2. 농작물, 수목 및 원예 관리 과정 ① 천연비료·약품 생산 및 사용교육 : 생활음식 등을 활용한 퇴비, 유기비료, 천연농약 ② 원예관리 과정 : 정서를 함양하는 화초, 수목 등 원예관리 과정 ③ 과수목 관리 과정 : 여가생활을 증진하는 전정작업, 접붙이기 등 실습·관리 과정 ④ 관상용 화초·토종작물 재배 : 심신 안정을 북돋는 관상용 화초, 토종 작물																					
3.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생활건강 ① 반려동물 습성과 관리 방법 ② 집 지키는 가축 사육 및 관리방법 (거위, 오리, 닭 등)																					
4. 생활영농 심화 체험 ① 산나물, 야생버섯, 취 등 야생초 교육 및 채취 ② 버섯재배, 건강 차 생산 실습 ③ 향토(저장) 음식 생산과정 (두부, 콩발효, 김치, 장아찌 등) 등 농촌문화 체험																					
※ 가격규제 완화 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 상향, 216천원 까지 가능 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																					

항목	내 용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이용자 대상 평가·진단 후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및 계약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에 따른 서비스를 선택하여 제공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회기별 서비스 제공기록지 작성</li> <li>② 반기별 1회 이용자 개별 모니터링 실시</li> </ul> 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종료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ul> </li> <li>※ 서비스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(영농기술인지도 또는 생활만족도) 의무실시</li> <li>※ 제공한 기본서비스 및 부가서비스 내역은 제공기록지에 모두 기록</li> </ul>
⑥ 집단규모	○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0인 이내 (1:1~1:10)
⑦ 서비스 실시지역	○ 전 구·군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 + 집단활동형

## 14 [990308] 성인(청년)심리지원서비스

항목	내 용																				
① 목적	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로 인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·장년 대상자에게 심리정서지원으로 심리문제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 촉진과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																				
② 서비스 대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소 득 : 중위소득 150% 이하</li> <li>○ 연 령 : 만 19세 이상 ~ 만 63세 이하</li> <li>※ 임신부생활건강지원서비스, 부모학교서비스 제공받는 중이면 신청불가</li> <li>○ 우선순위 : 1.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사(신경정신과, 정신과) 진단서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2. 심리적인 문제로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임상심리사 소견서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3. 기업체 대표가 추천한 근로자</li> <li style="padding-left: 20px;">4. 공공기관 또는 공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사회유관기관(복지관등) 추천자</li> <li>※ 우선순위 별 세부 순위는 이용자의 나이(많은 순), 소득수준 순</li> </ul>																				
③ 제공 기관 및 인력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2에 의한 “임상심리사”, “청소년기본법”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(2급 이상), “초·중등교육법” 제21조에 의한 전문상담교사, 국가전문자격 “정신보건임상심리사” 취득 후 <u>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</u></li> <li>2. 심리학과, 상담학과, 사회복지학과,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,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</li> <li>3. 심리학과, 상담학과, 상담심리학과, 사회복지학과, 교육학과 등 심리 및 상담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심리, 상담 및 치료분야 관련 자격증 취득 후 성인상담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,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 실무경력 6개월 이상인 자</li> </ol>																				
④ 서비스 가격 및 제공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가격 : 200천원/월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 text-align: center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 <th>구분</th> <th>1등급</th> <th>2등급</th> <th>3등급</th> <th>4등급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대상자</td> <td>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</td> <td>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</td> <td>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</td> <td>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</td> </tr> <tr> <td>정부지원금</td> <td>180천원</td> <td>160천원</td> <td>140천원</td> <td>120천원</td> </tr> <tr> <td>본인부담금</td> <td>20천원</td> <td>40천원</td> <td>60천원</td> <td>80천원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※가격규제 완화사업 : 기준가격 대비 20% 최대 상향, 240천원까지 가능 (기준가격 차액은 본인부담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기간 : 6개월</li> </ul>	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	정부지원금	180천원	160천원	140천원	120천원	본인부담금	20천원	40천원	60천원	80천원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																
대상자	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	중위소득120%이하중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가 아닌 자	중위소득120%초과~140%이하	중위소득140%초과~150%이하																	
정부지원금	180천원	160천원	140천원	120천원																	
본인부담금	20천원	40천원	60천원	80천원																	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내용</li> </ul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 style="background-color: #d9d9d9;"> <th style="width: 80%;">서비스 내용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서비스 횟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</li> <li>②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</li> <li>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</li> <li>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</li> </ol> </li> <li>2. 가족상담 진행</li> </ol> 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vertical-align: top;">                     주1회/월4회 (회당 6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필요 시 (회당 60분)                 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</li> <li>②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</li> <li>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</li> <li>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</li> </ol> </li> <li>2. 가족상담 진행</li> </ol>	주1회/월4회 (회당 6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필요 시 (회당 60분)																
서비스 내용	서비스 횟수																				
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① 심리정서적인 문제(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 등)에 대한 개입 및 예방</li> <li>② 관계, 상황적 스트레스 대처능력 향상</li> <li>③ 의사소통 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</li> <li>④ 진로 및 자기개발 향상</li> </ol> </li> <li>2. 가족상담 진행</li> </ol>	주1회/월4회 (회당 60분) *1일 1회 서비스 원칙  필요 시 (회당 60분)																				

항목	내 용
⑤ 서비스 내용 및 제공절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제공절차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1단계 : 신청 된 대상자 욕구 조사 (사전검사 의무실시)</li> <li>2. 2단계 : 선정된 이용자에게 욕구에 맞춘 서비스 제공</li> <li>3. 3단계 :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평가 (사후검사 의무실시)</li> </ul> </li> <li>※ 이용자 대상 사전·사후검사 의무 실시</li> <li>○ 사전·사후 검사 심리평가도구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격, 우울, 불안, 강박, 스트레스 등 개인 심리상담 관련 필요한 검사를 통한 주된 문제 및 욕구 파악 (MMPI-2, HTP, KFD, SCT, BDI, STAli, PTSD척도, Rorschach 검사 등 검사도구 중 한가지 이상 활용)</li> </ul> </li> </ul>
⑥ 집단규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제공인력 1명당 이용자 1인 원칙 (1:1)</li> <li>단, 가족상담 진행 시에는 이용자 가족까지 대상 인원으로 함</li> </ul>
⑦ 서비스 실시지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전 구·군</li> </ul>
⑧ 기타 등록 조건 및 유의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서비스 형태 : 기관방문형</li> </ul>